

공시송달 공고

1. 제 목 :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1.05.13 ~ 2021.05.28(15일간)
3. 공고대상

부과대상		위반내용	부과금액		반송 사유
성명	주소		납기 내 (2021.06.14)	납기 후	
한*영	충북 영동군 학산면 모산길 ***	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 운행	500,000원	500,000원 + 가산금 및 증가산금	폐문

4. 공고내용

- 가.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,
- 나. 위 공고기간 내에 학산면사무소(☎ 043-740-5870)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.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학산면사무소로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시면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으로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
- 라.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며,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. 체납된 과태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1년 05월 13일

학 산 면 장

